

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

의안 번호	1440
----------	------

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2. 1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440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2년 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반영으로 예치금회수수입이 당초 41,911백만원에서 54,039백만원으로 12,128백만원 증가함.
- 나. 지출부문은 신규사업 편성(기후테크 경연대회)으로 정책사업비(기후변화대응강화)를 당초 38,282백만원에서 38,302백만원으로 20백만원 증액하고,
- 다. 예치금을 28,308백만원에서 40,416백만원으로 12,108백만원 증액 반영하여, 정책사업비를 38,302백만원으로, 예치금을 40,416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.

라. 수입계획 변경내용

○ 예치금회수 12,128백만원 증액

- (당초) 41,911백만원 → (변경) 54,039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< 수 입 부 문 >				
구 분	당 초 (A)	변경 (B)	증 감 (B-A)	증감률 (B/A)
계 (순수입)	66,595 (12,684)	78,723 (12,684)	12,128 -	18.2% -
예 치 금 회 수	41,911	54,039	12,128	28.9%
예 탁 금 원 금 회 수	12,000	12,000	-	-
융자금회수(이자포함)	4,563	4,563	-	-
이 자 수 입	2,924	2,924	-	-
기 타 수 입	4,341	4,341	-	-
전 입 금	856	856	-	-

마. 지출계획 변경내용

○ 정책사업비(기후변화대응강화) 20백만원 증액, 예치금 12,108백만원 증액

- 기후테크 경연대회 20백만원 신규편성 ※ 3차 변경

- 예치금 (당초) 28,308백만원 → (변경) 40,416백만원 ※ 3, 4차 변경

(단위: 백만원)

< 지 출 부 문 >							
구 분		당 초 (A)	1차 변경	2차 변경 (B)	3차 변경 (C)	4차 변경 (D)	증 감 (E=D-B) 증감률 (D/B)
계 (순지출)		66,595 (22,487)	66,595 (26,473)	66,595 (38,287)	66,595 (38,307)	78,723 (38,307)	12,128 (20) 18.2% 0.1%
정책사업비 (기후변화 대응강화)	계	22,482	26,468	38,282	38,302	38,302	20 0.2%
	융자성 사업비	17,684	17,684	27,684	27,684	27,684	- -
	비용자성 사업비	4,798	8,784	10,598	10,618	10,618	20 0.2%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5	5	5	5	5	- -
재무활동	예치금	44,108	40,122	28,308	28,288	40,416	12,108 42.8%

※ 최종 의회 의결액(2차, 제319회 정례회)대비 재무활동 20% 초과(42.8%)

III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 121억 2,8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중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에 121억 800만원¹⁾을 반영하고, 정책사업인 **기후변화대응강화중** 신규사업(기후테크 경연대회)에 2,0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³⁾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, 의결된 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⁴⁾의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보다 지출계획을 42.8%, 121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 변경

- 3차 변경('23. 7.17) : 기후변화 대응강화(2,000만원), 재무활동(△2,000만원)

※ 「지방기금법」 제11조 단서규정(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에 따라 의회의결 없이 자체변경

- 4차 변경(금번 변경안) : 재무활동(121억 2,800만원)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3)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('22. 7), p.296

4) 의안번호 : 911, 「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(의결일 : '23. 7. 5)(원안가결)

〈표 3-1〉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/단위사업/세부사업	6월 정례회의 회의결 (A)	3 차 변 경	변 경 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률 (D=C/A)
지 출 합 계	66,595	66,595	78,723	12,128	18.2
기후변화대응강화	38,282	38,302	38,302	20	0.2
일반예산(재무활동)	28,308	28,288	40,416	12,108	42.8
보 전 지 출	28,308	28,288	40,416	12,108	42.8
여유자금 예치	28,308	28,288	40,416	12,108	42.8
행 정 운 영 경 비	5	5	5	0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,
②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3.10.16) 재구성

- 동 기금의 경우, 이미 지난 6월, '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시 잉여자금 예치 총액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증가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어⁵⁾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은 이미 예정된 수준으로 판단됨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에 '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'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제출하고,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금번 정례회중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'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,
- '22회계연도 기금 결산결과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'23회계연도 종료가 도래한 시점이 되어서야 제출하고, 의결 결과를 예단하여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는 전례가 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5)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「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」('23. 6), p20